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6월 2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서연남 미래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청년들의 기초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 예산범위 명확화(안 제21조)
- 청년 건강 보호·증진 위한 필요 비용 지원 근거 신설(안 제2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최근 10년 사이에 불균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국내 청년층(20·30대)의 2형 당뇨병 유병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, 청년층 고혈압 유병자 수도 8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, 과거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던 만성질환이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

는 실정임.

- 한편,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며, 청년 인구 수는 6위를 차지하는 등 청년 비율이 높은 편임에 따라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성장 동력인 청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1조(청년의 건강 증진)제2항은 청년의 건강 보호·증진을 위하여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
- 「청년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지자체는 청년의 육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,
- 지속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, 청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동을 장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.

□ 검토결과

- 청년층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, 이용권 지급 등은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‘청년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비 지원’은 중위소득 150%이하 청년 중 5%에게 1인당 연 최대 10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
 - 해당 사업이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“건강한 생활습관 형성”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“육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”이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사후평가 및 환류의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 - 또한,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권의 현금화, 타인 양도 등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5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6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청년들의 기초 건강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 예산범위 명확화(안 제21조)
- 나. 청년 건강 보호·증진 위한 필요 비용 지원 근거 신설(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년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2026년 본예산 반영 예정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할 사항 없음
 - 4) 인권영향평가: 별도 요청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5. 5. 1. ~ 5. 21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
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
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청년의 건강 증진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(청년의 건강 증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구청장은 청년의 건강 보호 ·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 청장이 정한다.</u>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내역 : 청년 체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세출 발생

- 안 제21조제2항 신설: 청년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비 지원 사항

2. 비용추계 기준

- 소요비용: 450,000천원(100천원x4,500명)
- 지원단가: 1인당 연 최대 10만원(수강료 실 소요액의 90%, 본인부담금 10%)
- 지원규모(안): 4,500명(영등포구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중 5%)
-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①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②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50%이하인 ③19세~39세 청년

※ 2025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3,588,000원

3. 비용추계 상세내역

- 지원규모 세부산출내역

- 영등포구 청년 인구: 130,634명(2024년 12월 31일 기준)

- 취업청년*(60%, 78,380명) + ❶학생 등 미취업 청년(40%, 52,254명)

↳ ❷취업청년 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**(47.6%, 37,308명)

- 영등포구 중위소득 150%이하 청년(❶52,254명+❷37,308명) = 89,562명
(영등포 전체 청년인구의 68.6%)

➔ 지원규모(안) 4,500명 = 영등포구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중 약 5%
영등포 청년 인구 중 3.4%

* 자료 출처: 통계청, 지역별 고용조사 중 영등포구 15~29세 고용률 (2024년 상반기)

** 자료 출처: 국민연금공단, 국민연금통계 기준소득월액 구간별·연령별 가입자(2023년 12월말)

4.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청년 체육 활동비 지원	450,000	450,000	630,000	720,000	900,000	3,150,000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-450,000	-450,000	-630,000	-720,000	-900,000	-3,150,000

※ 3차년도 지원규모: 6,300명(영등포구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중 약 7%)

※ 4차년도 지원규모: 7,200명(영등포구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중 약 8%)

※ 5차년도 지원규모: 9,000명(영등포구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중 10%)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국비	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					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450,000	450,000	630,000	720,000	900,000	3,150,000
합계		450,000	450,000	630,000	720,000	900,000	3,150,000

6. 추가의견: 없음

7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이 진
연 락 처	02-3457-7217